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6호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	-----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의 원 : 김수혜 · 손태화 의원(2명)

찬 성 의 원 : 구점득 · 김경수 · 김경희 · 김남수 · 김현일
김혜란 · 남재욱 · 박선애 · 서명일 · 성보빈
안상우 · 이종화 · 이해련 · 전홍표 · 진형익
최정훈 · 한상석 · 홍용채 · 황점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후원연계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